

제18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2012.05.25.)

# 조례안 검토 보고서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박광용]

## 목 차

1	거창군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3
2	거창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	13
3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4	거창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5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 거창군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 2012. 05. 17.

나. 제출자 : 안철우 · 강철우 · 조선제 · 류영수 · 이애숙

다. 회부일자 : 2012. 05. 17.

### 2. 제안이유

- 군의 주요정책에 대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각종 주요시책 추진에 따른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갈등 예방과 해결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양보와 타협이 존중되는 지역 사회 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함

### 3. 주요내용

-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나. 지역사회의 갈등 예방 및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다. 주요정책을 수립 · 시행 · 변경함에 있어서 군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군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갈등영향 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 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갈등 조정협의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마. 협의회는 갈등 사안에 대해 협의하여 조정된 협의 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이해당사자에게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바. 협의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에 대해 비밀유지 규정을 둠(안 제9조)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3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입법예고 결과 : 해당 없음

마.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군에서 시행하는 주요정책이나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갈등에 대해 예방과 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정 주요시책 추진에 따른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갈등 예방과 해결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양보와 타협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 그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1조**에서는 제정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 **안 제3조**에서는 지역사회의 갈등 예방과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에서는 이해관계인이 주요정책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도록(노력) 규정
  - **안 제6조**에서는 주요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함에 있어서 군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군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책 등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7조**에서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 **안 제8조**에서는 협의회에서 협의 조정된 협의결과문을 이해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으며 이해당사자는 성실하게 이행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 **안 제9조**에서는 협의회 위원과 관계공무원 등은 협의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도록 규정함.
- 이 제정 조례안은 군정 주요정책이나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갈등에 대해 예방과 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 제정조례와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 (타)일부개정 2008.12.24 대통령령 제21185호 ]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앙행정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책무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갈등"이라 함은 공공정책(법령의 제정·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2. "갈등영향분석"이라 함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이 영은 중앙행정기관(총리령으로 정하는 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은 이 영과 동일한 취지의 갈등관리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중앙행정기관의 책무) ①중앙행정기관은 사회 전반의 갈등예방 및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은 갈등의 예방 및 해결과 관련된 법령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은 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④중앙행정기관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갈등을 예방하고 갈등 해결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갈등관리능력을 기관의 인사운영의 중요한 기준으로 설정·반영하여야 한다.

## 제2장 갈등 예방 및 해결의 원칙

제5조(자율해결과 신뢰 확보) ①갈등의 당사자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참여와 절차적 정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이해관계인·일반시민 또는 전문가 등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

**제7조(이익의 비교형량)**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공개 및 공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해관계인이 공공정책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지속가능한 발전의 고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 제3장 갈등의 예방

**제10조(갈등영향분석)**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함에 있어서 국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국민의 이해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제11조에 따른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조사 내용
3.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4. 갈등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쟁점
5.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6.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7. 그 밖에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등을 실시하면서 이 영이 정한 갈등영향분석 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8.12.24>

**제11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사무의 갈등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갈등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기관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당해 기관의 장이 판단해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 또는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⑦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제4조제2항에 따른 법령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
3. 제4조제3항에 따른 다양한 갈등해결수단의 발굴·활용에 관한 사항
4. 제4조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제10조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6. 갈등의 예방·해결에 관한 민간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갈등의 예방·해결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4조(심의결과의 반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공공정책의 수립·추진 과정에 성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3조제5호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에 대한 심의결과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이해관계인·일반시민 또는 전문가 등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일반시민 또는 전문가 등도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결과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제4장 갈등조정협의회

제16조(갈등조정협의회)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갈등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7조(협의회의 구성) ①협의회는 제19조에 따른 의장 1인,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이해관계인으로 구성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이해관계인(이하 "당사자"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단체와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③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의 당사자는 그 중 1인 또는 수인을 대표 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다.

제18조(의장의 역할) 협의회 의장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당사자간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당사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19조(의장의 선임) 협의회 의장은 당해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 중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0조(협의회의 기본규칙 등) ①협의회의 구체적인 구성과 운영은 당사자가 정하는 기본규칙에 따른다.

②협의회의 기본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

1. 협의회의 목적
2. 당사자의 범위
3. 협의회 의장의 선정
4. 진행일정
5. 협의의 절차
6. 협의결과문의 작성

7. 협의회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

③당사자는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의 이익이 되는 대안을 창출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21조(협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 ①협의결과문의 내용은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협의회 절차의 공개)** 이 영에 의한 협의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들이 모두 합의한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제23조(비밀유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공무원은 협의회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제5장 보칙

**제24조(갈등관리연구기관의 지정·운영)** ①국무총리실장은 갈등관리와 관련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갈등관리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갈등관리 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8.2.29>

1.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정책·법령·제도·문화 등의 조사·연구
2. 갈등의 예방·해결 과정과 관련된 매뉴얼 작성·보급
3.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4.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조사·연구
5.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방법에 대한 조사·연구
6. 그 밖에 갈등의 예방·해결에 필요한 사항

②국무총리실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③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5조(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 ①국무총리실장은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갈등관리매뉴얼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갈등관리매뉴얼을 활용하여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배부된 매뉴얼에 각 부처의 특성을 반영한 내용을 추가·보완할 수 있다.

**제26조(갈등관리실태의 점검·보고 등)** ①국무총리실장은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갈등관리의 실태 등을 점검·평가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②국무총리실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평가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갈등관리 실태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국무총리실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평가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 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⑤갈등관리에 대한 관계부처간의 협의 등을 위하여 제11조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한 중앙행정기관으로 구성되는 갈등관리정책협의회를 국무조정실에 둔다.

⑥제1항에 따른 점검과 제5항에 따른 갈등관리정책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7조(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의 협의 등)**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정」 제2조제1호 및 별표와 관련된 정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다수 부처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정」 제3조의2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갈등조정특별위원회와 협의하거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갈등전문인력의 양성 등)** 중앙행정기관은 갈등관리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 자격제도의 도입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제29조(수당지급 등)** ①중앙행정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위원 또는 제20조제2항제7호에 따라 발생한 비용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은 갈등관리에 필요한 조사·연구·교육훈련과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갈등관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다.

#### 부칙 <제19886호, 2007.2.12>

이 영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무총리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4호, 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제2항·제4항 중 "국무조정실장"을 각각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② 부터 ⑦ 까지 생략

부칙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1185호, 2008.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으로 한다.

③ 부터 <2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 거창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2. 05. 17
- 나. 제출자 : 강철우 · 강창남 · 류영수 · 김재권
- 다. 회부일자 : 2012. 05. 17

## 2. 제안이유

- 여성장애인에게 출산지원금을 지원하여 저 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와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기 위함.

## 3. 주요내용

-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나.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대상을 규정함(안 제3조)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 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장애인
- 다. 출산지원금 지급기준 및 지원금을 규정함(안 제4조)
  - 장애등급 1~2급(150만원), 3~4급(100만원), 5~6급(70만원)
  -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비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

- 라. 지급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하고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 읍·면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지원금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안내
- 마. 출산지원금 지급절차를 규정함(안 제6조)
  - 읍·면장은 신생아의 신고사항,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 결정
- 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즉시 환수 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7조

나. 예산조치 : 예산담당 부서와 협의

다. 합 의 : 기획감사실(예산담당, 법무통계담당)

라. 입법예고 결과 : 해당사항 없음

마.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5. 검토의견

- 이 제정 조례안은 여성장애인 출산지원을 통해 장애인 산모와 출산자녀의 양육환경을 향상시키고 의료비 지출이 많은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을 통한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서

### ○ 그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 **안 제3조**에서는 지원금 지급대상으로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 6개월 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장애인으로 규정.
  - **안 제4조**에서는 출산지원금 지급기준 및 지원 금액으로 장애등급 1~2급(150만원), 3~4급(100만원), 5~6급(70만원)으로 하며 보건복지부의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비를 받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토록 규정함.
  - **안 제5조**에서는 출산지원금 지급 신청절차로서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하며 읍·면장은 지급대상여부를 확인하고 안내조치  
⇒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하도록 규정
  - **안 제6조**에서는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출생신고사항,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서를 군수에게 송부
  - **안 제7조**에서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 **안 제8조**에서는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접수대장 및 지급대장을 작성 관리하도록 규정함
- 이 제정 조례안은 여성장애인에게 출산지원금을 지원하여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와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로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 제정 조례와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 등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6. 참고자료

## ● 관련법령 발췌

### □ 「장애인 복지법」 제7조

[시행 2012.3.31] [법률 제10517호, 2011.3.30,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 02-2023-8199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에 있다.

제4조(장애인의 권리) ①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는다.

②장애인은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그 밖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장애인은 장애인 관련 정책결정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

제5조(장애인 및 보호자 등에 대한 의견수렴과 참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정책의 결정과 그 실시에서 장애인 및 장애인의 부모, 배우자, 그 밖에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6조(중증장애인의 보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이라 한다)이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초학습과 직업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차별금지 등) 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장애인을 비하·모욕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인의 장애를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2. 05. 17.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2. 05. 17.

### 2. 개정이유

- 이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과 명칭 및 용어를 정비하고 그동안 조례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 3. 주요내용

- 가.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기간을 변경함(안 제8조)
  - 3년 이내 ⇒ 5년
- 나.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안 제16조)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준용
- 다. 「영유아보육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용어 정비 (안 제4조, 안 제12조, 안 제14조, 안 제18조, 안 제19조, 별지 제2호 서식)
  - 종사자 ⇒ 보육교직원, 직원
  - 기타 ⇒ 그 밖의, 그 밖에
  - 각호의 1 ⇒ 각 호의 어느 하나

라. 어린이집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정비함(안 별표)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2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 2,
- 2012년 보육사업지침(보건복지부)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조의2, 제1조의 3, 제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다. 입법예고(2012.03.28. ~ 2012.04.16.) 결과: 특기사항 없음

라.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5. 검토의견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기간을 변경하고 보육교직원의 복무에 관한 법령을 정비하여 복무기장을 확립하고 법령개정에 따른 명칭 및 용어를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 ○ 그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5조**에서는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영유아는 「영유아보육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 입소순위에 따라 매년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이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규정하였음.
- **안 제8조**에서는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운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였음.

- **안 제16조**에서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였고

- **안 제4조, 안 제12조, 안 제14조 등**에서는 「영유아보육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용어를 정비하였음.

○ 이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내용과 용어를 정비하고 일부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 개정조례와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 「영유아보육법」

[시행 2012.3.21] [법률 제11382호, 2012.3.21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2.19, 2011.6.7>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법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2.2.3]

[별표 8의2] <신설 2012.2.3>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제24조의2 관련)

#### 1. 일반기준

- 가. 공개경쟁을 통해 최초로 선정하여 신규 위탁하는 경우 개원 예정일 6개월 전까지 선정한다.
- 나. 위탁과 관련한 모든 절차, 방법 및 심의 결과는 공개한다. 이 경우 위탁을 하는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 다.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라. 신청자격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운영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어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위탁운영을 신청하려는 운영체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 1) 법 제16조 및 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2) 최근 5년 내 보육과 관련되는 법령 위반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자
- 3) 주된 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또는 단체
-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마. 제28조 각 호의 취약보육(영아·장애아·다문화아동·시간연장형 보육) 중 2가지 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보육수요 조사 결과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취약보육 실시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심사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다만,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갈음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및 위원회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사. 집합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아. 심사결과, 신청 운영체가 모두 부적격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다시 공개모집을 하여 위탁체를 결정한다.

## 2. 심사기준

심사항목 및 항목별 점수는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하며, 세부항목 등 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심사항목	항목별 점수
가. 어린이집 운영계획	40
나.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35
다. 운영체의 운영실적	10
라. 운영체의 공신력	10
마. 운영체의 재정능력	5
합계	100

## 3. 심사결정

가.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최저점수는 점수합산에서 제외하고 합산 평균 70점 이상의 최대 득점을 받은 운영체를 위탁체로 결정한다. 운영체의 점수가 모두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다시 공개모집을 하여 위탁체를 결정한다.

나. 심사결과 동점이 나온 경우에는 제2호의 심사항목 중 가목(어린이집 운영계획), 나목(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다목(운영체의 운영실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4. 그 밖에 공고, 위탁계약 등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근무기강의 확립)** ①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제8조에 따른 공무원은 제외한다)은 집단·연명(聯名)으로 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집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제1조의3(복장 및 복제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제1조의2에 따른 근무기강을 해치는 정치적 주장을 표시 또는 상징하는 복장을 하거나 관련 물품을 착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2조(근무시간 등)** ①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소속 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주 40시간 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한다.<개정 2011.4.28>

④ 「전자정부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 □ 「2011년 영유아보육법령 주요개정사항」

○ `11.6.7일 개정·공포 법률 [시행 2011.12.8]

### ○ 용어변경(제2조 등)

- 보육시설 → 어린이집
- 보육시설 종사자 → 보육교직원
- 보육시설의 장 → 어린이집의 원장
- 종사자 → 직원

거창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2. 05. 17.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2. 05. 17.

## 2. 제안이유

-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 시행기관 및 시험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시 공고생략 범위를 확대하며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및 현행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

## 3. 주요내용

- 가.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기관 및 임용절차를 명시함  
(안 제5조 제1,2,4항)
  - 임용시험 시행기관 :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로 명시
  - 임용시험의 절차 및 방법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임용시험방법), 제45조(임용시험의 단계), 제48조(시험위원)를 준용

나.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시 공고생략 범위를 확대함 (안 제5조 3항)

- 별정직공무원의 상위 직위 결원 발생 시 하위 직위 현직자를 임용 시 재임용으로 간주하고 공고생략
-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와 정원의 변경 등으로 별정직 공무원을 상당계급 및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재임용하는 경우 공고생략

다. 임용시험의 공동시행 및 위탁제도 마련(안 제5조의2)

-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필요 시 상호간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시행하거나 위탁가능 하도록 보완

라. 직권면직 사유 중 “신체·정신상의 장애” 삭제(안 제10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장애인 차별 조항인 직권면직사유 중 “신체·정신상의 장애” 사유를 삭제

마. 질병휴직 등 허용과 결원보충제도 개선에 따른 인력충원방법 개선 (안 제11조)

-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 개정에 따라 질병·소재불명·간병휴직 허용과 함께 별도정원 인정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하여 사용 시 출산휴가 시부터 후임자 보충이 가능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결원보충 규정 보완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63조, 제65조의2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 제45조, 제48조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 라. 입법예고(2012. 3. 30. ~ 4. 20.)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마.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5.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임용 시 공고생략 범위를 확대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의 투명성 제고와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 ○ 그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5조**에서는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절차를 명시 하고 있으며
- 임용시험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되 5급상당 이상의 임용시험은 군수의 요구에 따라 경상남도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은 구체적인 직무수행 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토록 규정하고 공고제의 대상을 명확히 함
  - 별정직공무원의 상위 직위 결원발생 시 하위 직위 현직자를 임용 시 재임용으로 간주하고 공고생략
  -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와 정원의 변경 등으로 별정직 공무원을 상당계급 및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재임용하는 경우 공고생략
- 지방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임용자격기준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을 통하여 검정하도록 규정함

- **안 제5조의2**에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
- **안 제10조**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직권면직사유 중 장애인차별 조항인 “신체·정신상의 장애” 사유를 삭제
- **안 제11조**에서는 질병휴직 등 허용과 결원보충제도 개선에 따른 인력충원 방법으로
  - 질병·소재불명·간병휴직 허용과 함께 별도정원 인정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하여 사용 시 출산휴가 시부터 후임자 보충이 가능하도록 개정 보완
- 이 개정 조례안은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 시행기관 및 시험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시 공고생략 범위를 확대하며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및 현행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서
- 개정 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지방공무원법

[시행 2011.8.24] [법률 제10700호, 2011.5.23, 일부개정]

**제7조(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에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제외하되, 그중 시의 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별로 인사위원회를 두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는 필요하면 제1인사위원회와 제2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는 위원 7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되, 제3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고,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원의 자격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험위원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따로 위촉할 수 있다.

1.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재직하는 사람
3.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위 조직의 장
5.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의 지역단위 조직의 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1.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3. 지방의회의원

⑤ 제3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에게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⑦ 위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12.31]

**제41조(휴직자·장기훈련자 등의 결원 보충)** ① 공무원이 제63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5호, 제63조제2항 또는 제65조의2에 따라 6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일부터 그 휴직자의 직급 또는 상당 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라 휴직할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상 휴직하더라도 결원을 보충할 수 있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일부터 후임자를 보충할 수 있다. <개정 2011.5.23>

② 공무원이 제30조의4에 따라 파견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기간 중 그 파견자의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하거나 파견된 사람의 승진임용을 할 수 있다. 다만, 남은 파견기간이 2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무원에게 한 파면처분·해임처분·면직처분 또는 강등처분에 대하여 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무효나 취소의 결정 또는 판결을 한 경우에는 그 파면처분·해임처분·면직처분 또는 강등처분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하였던 때부터 파면처분·해임처분·면직처분을 받은 사람의 직급 또는 강등처분을 받은 사람의 원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5.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이후 해당 직급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한 때에 각각 소멸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정원은 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5.23>

1. 휴직자의 복직
2. 파견된 사람의 복귀
3. 파면·해임·면직된 사람의 복귀 또는 강등된 사람의 원직급 회복

[전문개정 2008.12.31]

**제63조(휴직)**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되었을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생사(生死) 또는 소재(所在)가 불명확하게 되었을 때
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되었을 때
5.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②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3>

1. 국제기구·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
2. 해외유학을 하게 되었을 때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되었을 때
4.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5.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배우자·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할 때

6.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할 때

③ 제1항과 제2항의 휴직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임용권자는 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65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 ① 정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63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64조제2호·제8호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②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4호·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6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8호·제9호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③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63조제1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64조제1호·제2호·제8호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63조제2항제4호는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부터 남은 계약 기간이 6개월이 넘는 사람에 한하여 준용한다.

④ 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5.23]

## □ 지방공무원 임용령

[시행 2012.2.28] [대통령령 제23633호, 2012.2.28, 일부개정]

**제44조(임용시험의 방법)** ① 임용시험은 필기시험, 면접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등을 거쳐 최종합격을 결정한다.

② 필기시험은 일반교양정도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檢定)한다.

③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한다.

④ 실기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실험, 실습이나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한다.

⑤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45조(임용시험의 단계)** ① 임용시험을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과 제3차 시험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차 시험에 합격해야만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제2차 시험에 합격해야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업무 내용이 특수한 직급의 임용시험에서는 시험실시기관이 시험 실시 단계의 순서를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되, 전(前) 단계 시험에 합격해야만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직시험과 5급으로의 일반승진시험을 제1항에 따라 단계별로 실시할 때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前) 단계 시험의 합격을 결정하기 전에 다음 단계의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8.22>[전문개정 2009.2.6]

**제48조(시험위원 등)**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시험에 관한 출제, 채점, 면접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과 그 밖에 시험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험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직무분야의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2. 시험출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3. 임용예정 직무에 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시험문제 작성상의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에 따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을 위반함으로써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시험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명단을 모든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해당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시험위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5년간 그 사람을 이 영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지방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시험의 시험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없다.

⑤ 시험위원·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의 수당과 여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위원·시험관리관·채점요원 및 시험편집요원의 수당과 여비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1.12.8] [법률 제10789호, 2011.6.7, 타법개정]

**제10조(차별금지)** ① 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노동조합은 장애인 근로자의 조합 가입을 거부하거나 조합원의 권리 및 활동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2. 05. 17.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2. 05. 17.

## 2. 제안이유

- 2012년 경상남도 출산지원 시책사업 중 셋째이상 출산가정에 대한 출산 장려금을 증액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고, 저 출산 극복의 인구증가시책 일환으로 추진 중인 출산장려 지원시책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 3. 주요내용

- 가. 셋째아이 이상 출산장려금 증액 지원(안 제5조 6호)
  - 20만원 ⇒ 50만원(30만원 증액)
- 나. 출생장려지원대상 자격 변경 (안 제6조 제3항)
  - 태아 건강보험 대상자 : 임신확인일 기준
- 다. 출생장려지원 신청 및 지원절차 변경 (안 제8조)
  -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기재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군수에게 제출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경상남도 2012년 출산지원시책 사업안내

나. 예산조치 : 예산담당 부서와 협의

- 예산확보 : 31,000천원(도비9,300, 군비21,700)

다. 합 의: 기획감사실(예산담당, 법무통계담당)

라. 입법예고(2012. 04. 18. ~ 05. 10) 결과: 특기사항 없음

마.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5.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2012년도 경상남도 출산지원시책사업 지침에 의거 셋째아이 이상 출산장려금을 증액 지원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그동안 운영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 ○ 그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5조**에서는 셋째아이 이상에 대한 출산장려금을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증액 지원토록 하였으며  
⇒ 둘째이상 모두 50만원 지급

- **안 제6조**에서는 지원대상 자격으로

- 출산장려금 : 신생아 출생일 기준
- 태아·출생아 건강보험
  - 태아 건강보험 : 임신확인일
  - 출생아 건강보험 : 신생아 출생일

- ⇒ 부모 모두 6개월 이전부터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군에 출생신고를 한 사람

- **안 제8조**에서는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서의 기재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군수에게 즉시 제출토록 규정

○ 이 개정 조례안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을 둘째아이 이상에 대해 증액 지원하고 일부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 개정조례와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 2010. 3.19] [법률 제9932호, 2010. 1.18, 타법개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인구정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정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교육과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지원하여야 한다.
-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모자보건의 증진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태아 및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 등 모자보건의 증진과 태아의 생명존중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출산·양육의 사회적 의미와 생명의 존엄성 및 가족구성원의 협력의 중요성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출산 및 양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관을 설치하거나 그 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 경상남도 2012년 출산지원시책 사업안내

### IV |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 1. 목 적

- '10년 우리나라 출산율 1.23명으로 OECD국가 중 최하위(경남 1.41명)
- 출산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출산친화적인 분위기 조성으로 도민 출산율 제고

#### 2. 추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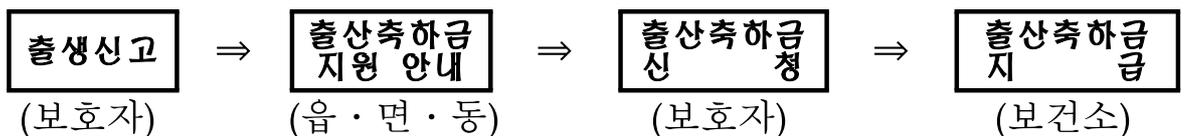
- 출산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도민 출산율 제고
- 출산이 가정의 부담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나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 마련

### 3. 사업 내용

- 사업기간 : 2012. 1월 ~ 12월
- 사업대상 : 도내 주소를 둔 셋째아이상 출산 가정
- 사업량 : 3,000명
- 지원내용 : 셋째이상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1인당 50만원 지급
- 사업비 : 1,500백만원(도비 30%, 시군비 70%)

### 4. 세부추진계획

- 대상자 파악(셋째아 이상 임산부) : 2012. 1월 ~ 12월
- 신청방법
  - 출산시 『셋째 이후 자녀 출산장려금신청서(서식 2)』를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
  - 읍·면·동장은 1개월분 취합 ⇒ 시장군수(보건소장)에게 전달
  - 보건소장이 주민등록등본으로 셋째이후 자녀 확인 후 계좌로 송금
    - ※ 신청서 양식은 읍·면·동 및 보건소에 비치하고 시군 홈페이지 등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
- 지원절차



### 5. 행정사항

- 사업홍보
  - 임산부건강교실, 임부체조교실 등의 보건교육의 장을 활용
  - 시·군정 소식지, 사군홈페이지 등 활용, 지원대상자가 누락 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 철저
  - 읍·면·동 사무소에 안내문 및 신청서 비치 등
- 사업실적 보고 : 매분기 익일 5일까지(서식 2) 지원실적을 보고